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7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원발의 정족수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근거조문 개정 및 띄어쓰기 등 변경 (안 제1조 ~ 제6조)
- 나.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를
“제53조·제54조·제56조” 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 를 “서울특별시 동작
구의회(이하 “의회”)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 “법” 이라 한다)제44조” 를 “(이하 “법” 이라
한다)제5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

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4조의 제목 “(정례회 집회일)” 을 “(집회)”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를 “정례회” 로 한다.

제4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4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후단 중 “구의회” 를 “본회”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54조에 따른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에 따른” 을 “법 제150조에 따라” 로, “구의회 회의에 올린” 을 “회의에 부쳐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 을 “법 제49조제1항” 으로, “법 제127조” 를 “법 제142조” 로, “구의회” 를 “의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의회 회의에 올린” 을 “회의에 부쳐진” 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u>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u> 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p> <p>제3조(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회기는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p> <p>② 법 제45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p> <p style="margin-top: 20px;"><신 설></p>	<p>제1조(목적) ----- -제53조·제54조·제56조----- ----- ----- ----- ----- -----.</p> <p>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u>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u>----- ----- -----.</p> <p>제3조(회기) ①----- (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 ----- -----.</p> <p>② <u>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u></p> <p>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p>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
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
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그 밖에 구의회 회
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
의규칙」을 준용한다.

법 제150조에 따라 -----
-- 회의에 부쳐진 -----
-----.

② ----- 법 제49조제
1항-----
법 제142조-----
----- 의회 -----
-----.

③ ----- 회의에 부
쳐진 -----
-----.

제7조(준용) -----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
의규칙」-----.